

신길재정비촉진지구(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5. 8. 28.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년 8월 14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5년 8월 21일

라. 상정일자: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일호 도시공간국)

가. 제안이유

○ 신길재정비촉진지구(신길5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부채납부지(어린이공원, 문화시설)를 활용하여 학교복합시설 건립하고자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변경 및 중복결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 대상지 개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및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본 의견청취의 건은

- 본 안건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부채납 부지(어린이공원, 문화시설)를 활용하여 학교복합시설(수영장)을 설치하기 위해,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문화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어린이공원 지하부에 체육시설을 중복결정하는 사항임.
- 변경결정(안)은 구역 경계, 면적, 용도지역·지구는 변동이 없으며, 기존 지상 어린이 공원($1,981 m^2$)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하 1층($1,500 m^2$)과 지하 2층($1,730 m^2$)에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로 변경한 것이 주요 사항임.
- 체육시설의 건폐율(60% 이하), 용적률(200% 이하), 높이(3층 이하)는 기정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음.
- 본 변경결정(안)은 수영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학교·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의견 없음

신길재정비촉진지구(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 588 호
------------------	---------

제출연월일: 2025. 8.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신길재정비촉진지구(신길5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부채납부지(어린이 공원, 문화시설)를 활용하여 학교복합시설 건립하고자 기결정된 도시 계획시설에 대하여 변경 및 중복결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추진경위

- 2005.12.16.: 신길뉴타운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5호)
- 2007.11.29.: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45호)
- 2008.10.07.: 신길5구역 조합설립인가
- 2010.09.16.: 신길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 2015.08.07.: 신길5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7.04.19.: 착공
- 2020.01.29.: 준공인가
- 2020.12.10.: 이전고시
- 2020.12.29.: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토지무상귀속(조합→영등포구)
- 2024.08.08.: '25년 학교복합시설 하반기(2차) 공모사업 공모 당선
- 2025.03.31.~04.16.: 구 관련 사전 부서협의
- 2025.05.08.~05.22.: 신길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개요 - 붙임1 참조

-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36 일대
- 구역면적 : 736,044.4 m^2 (변경대상지 면적 3,008.6 m^2)
- 주요내용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내 어린이공원, 문화시설을 어린이공원, 체육시설로 변경 및 중복결정하고, 학교복합 시설(수영장)을 건립하고자 함.

4. 주민 의견 청취

- 공람공고
 - 공고일: 2025. 5. 8.
 - 공고기간: 2025. 5. 8. ~ 5. 22.
 - 공람결과: 제출의견 없음
- 관련부서(영등포구·서울시) 협의 결과: 붙임2 참조

5. 검토의견

- 금회 안건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제안함.

붙임 1

신길5구역 변경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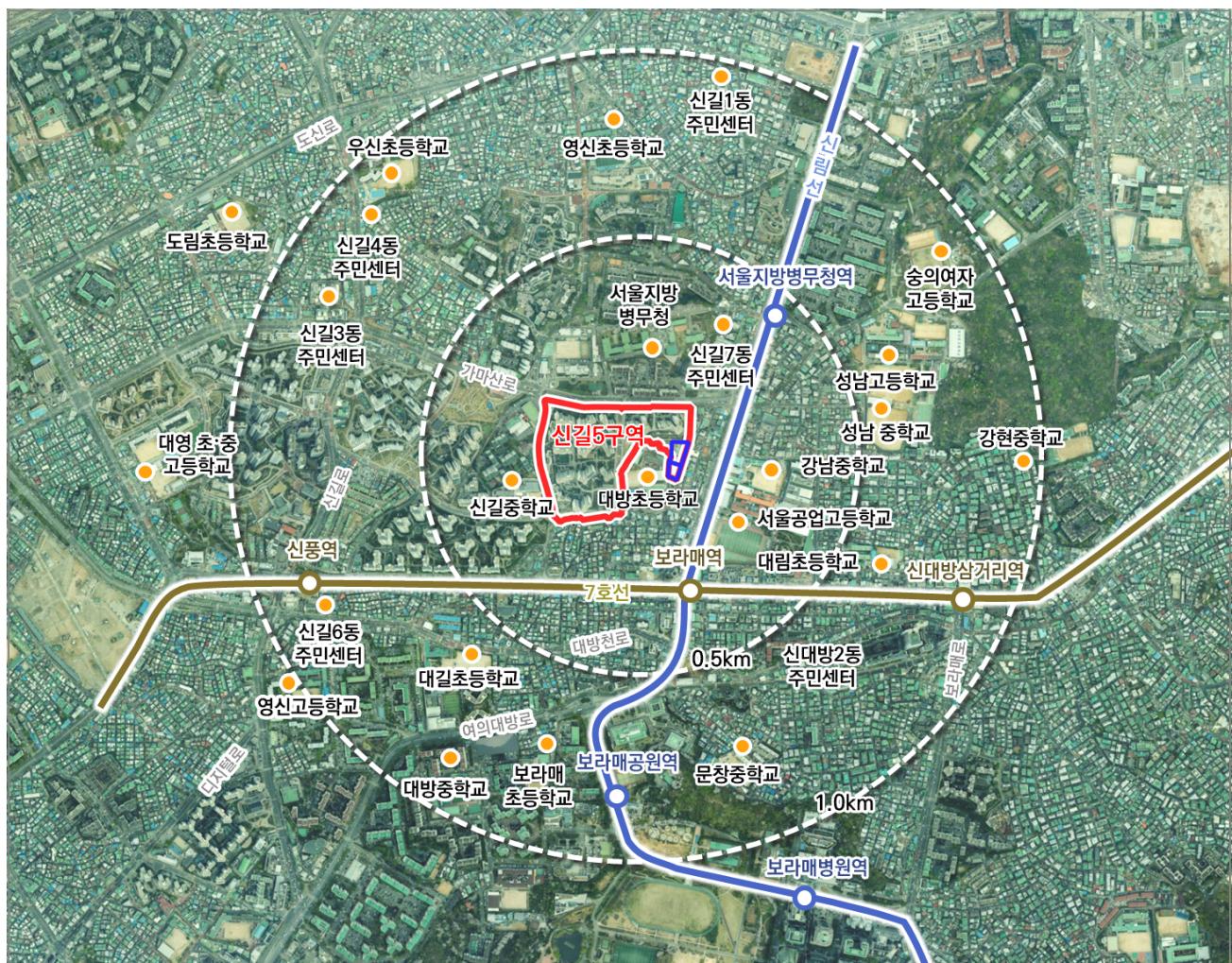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1. 재정비촉진지구 개요

1) 재정비촉진지구 개요(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736,044.4	-	736,044.4	

2) 위치도



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신길동 1583-1번지 일대	76,629.9	-	76,629.9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m ²)			비 율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6,629.9	-	76,629.9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3,763.7	-	13,763.7	18.0	-
	도로	6,730.5	-	6,730.5	8.8	무상귀속 (구)
	공원	3,619.5	-	3,619.5	4.7	
	녹지	2,751.4	-	2,751.4	3.6	
	보행자도로	662.3	-	662.3	0.9	
택지 (획지)	소 계	62,866.2	-	62,866.2	82.0	-
	5-1	45,490.2	-	45,490.2	59.3	공동주택
	5-2	13,583.4	-	13,583.4	17.7	공동주택
	5-3	1,777.2	-	1,777.2	2.3	학교시설 (무상귀속 : 교육청, 대토 392m ²)
	5-4	958.7	-	958.7	1.3	
	5-5	29.1	-	29.1	0.0	
	5-6	1,027.6	-	1,027.6	1.4	문화시설 → 체육시설 (무상귀속 : 구)

※ 토지이용계획 상 면적변경은 없으며, 택지(획지)의 5-6가구의 명칭을 문화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변경

3)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6,629.9	-	76,629.9	100.0	-
주거 지역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2,765.0	-	2,765.0	3.6
	제2종일반주거지역	73,864.9	-	73,864.9	96.4

4)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공간시설 결정(변경)조서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	어린이 공원	신길동 4960 일대	1,981.0	-	1,981.0	서고445 (07.11.29)	체육시설 증복결정
기정	5	-	소공원	신길동 2296 일대	1,498.1	-	1,498.1	서고445 (07.11.29)	-
기정	6	-	소공원	신길동 2306 일대	140.4	-	140.4	서고445 (07.11.29)	-

■ 어린이공원②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구분	총 수 /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변경	2	-	어린이 공원	영등포구 신길동 4960	총	지상 1,981	-	지상 1,981	서고445 (07.11.29)	• 체육시설 (수영장)을 어린이공원②과 체육시설① 지하에 신설
						지하1층 - 증) 1,500 (846)	지하1층 1,500 (846)	지하1층 1,500 (846)		
						지하2층 - 증) 1,730 (1,317.8)	지하2층 1,730 (1,317.8)	지하2층 1,730 (1,317.8)		

※ 지하1~2층에 위치하는 운동시설(수영장)의 면적 중 팔호안의 면적이 어린이공원 하부에 위치한 시설의 면적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	어린이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복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 : 어린이공원 1,981m² 지하1층 : 체육시설 1,500m² (공원 하부 시설 면적 846m²) 지하2층 : 체육시설 1,730m² (공원 하부 시설 면적 1,317.8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정된 면적에, 목적(대방초교 생존 수영교육장)과 수요에 부합한 시설규모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 수영장)을 어린이공원 지하부분에 증복결정

(2)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2	문화시설	-	신길동 4961	1,027.6	감) 1,027.6	-	서고445 (07.11.29)	-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문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시설 폐지 - 면적 : 1,027.6m² → -m² 감) 1,027.6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및 대방초등학생의 체육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문화시설을 폐지하고, 체육시설을 대체·신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체육시설	체육시설	신길동 4961	-	증) 1,027.6	1,027.6	금회	-
신설	2	체육시설	체육시설	신길동 4960, 4961	-	증) 3,230	3,230	금회	-

■ 체육시설 건축물의 범위 결정(변경)조서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또는 m)
체육시설 1	60	200	3층

■ 체육시설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구분	총 수 /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신설	1	체육 시설	체육 시설	영등포구 신길동 4961	총	지상 - 증) 1,027.6	지상 1,027.6	서고445 (07.11.29)	• 체육시설 (수영장)을 어린이공원②과 체육시설① 지하에 신설	
신설	2	체육 시설	체육 시설	영등포구 신길동 4960, 4961	총	지하1층 - 증) 1,500 (654) 지하2층 - 증) 1,730 (412.2)	지하1층 1,500 (654) 지하2층 1,730 (412.2)	서고445 (07.11.29)	• 체육시설 (수영장)을 어린이공원②과 체육시설① 지하에 신설	

※ 지하1~2층에 위치하는 운동시설(수영장)의 면적 중 팔호안의 면적이 체육시설 하부에 위치한 시설의 면적

■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체육시설	• 체육시설 신설 : - 면적 : m ² → 1,027.6m ² , 증) 1,027.6m ²	•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및 대방초등학생의 체육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문화시설을 폐지하고 체육시설을 신설
2	체육시설	• 체육시설 신설 및 종복결정 - 지상 : 체육시설 1,027.6m ² , 어린이공원 1,981m ² - 지하1층 : 체육시설 1,500m ² (체육시설 하부 시설면적 654m ²) - 지하2층 : 체육시설 1,730m ² (체육시설 하부 시설면적 412.2m ²)	• 한정된 면적에, 목적(대방초교 생존 수영교육)과 수요에 부합인 시설의 규모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 수영장)을 체육시설 지하부분에 종복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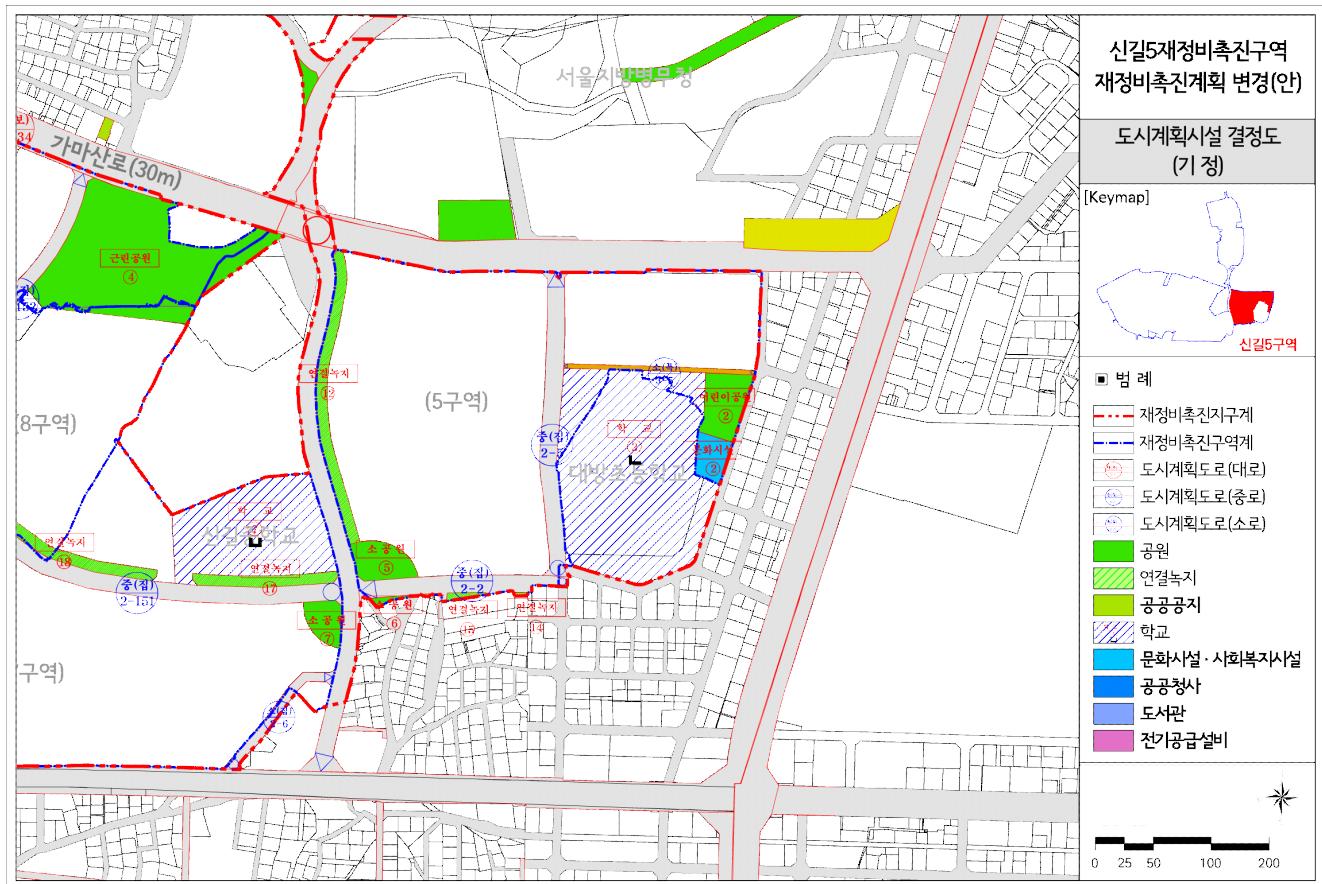
5)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흙지 구분		위치	연면적(m^2)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 층수																																					
	명칭	면적 (m^2)	명칭	면적 (m^2)																																											
기정	신길5 재정비 촉진구역	76,629.9	5-1	45,490.2	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 일대	156,254.15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25이하	265이하	22/29																																					
			5-2	13,583.4	영등포구 신길동 766-3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5-6	1,027.6	영등포구 신길동 4961번지 일대	2,055.20 이하	문화 및 집회시설	60이하	200이하	-																																					
변경	신길5 재정비 촉진구역	76,629.9	5-1	45,490.2	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 일대	156,254.15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25이하	265이하	22/29																																					
			5-2	13,583.4	영등포구 신길동 766-3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5-6	1,027.6	영등포구 신길동 4961번지 일대	2,055.20 이하	체육시설	60이하	200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합 계</th> <th colspan="3">분 양(전용면적, m^2)</th> <th colspan="4">임 대(전용면적, m^2)</th> </tr> <tr> <th>소 계</th> <th>85m^2 초과</th> <th>60~ 85m^2</th> <th>60m^2 이하</th> <th>소 계</th> <th>40m^2 이하</th> <th>40~ 50m^2</th> <th>50~ 60m^2</th> </tr> </thead> <tbody> <tr> <td>세대수</td><td>1,546</td><td>1,260</td><td>107</td><td>789</td><td>364</td><td>286</td><td>132</td><td>119</td><td>35</td></tr> <tr> <td>비율</td><td>100.00</td><td>81.50</td><td>6.92</td><td>51.04</td><td>23.54</td><td>18.50</td><td>8.54</td><td>7.70</td><td>2.26</td></tr> </tbody> </table>								구 분	합 계	분 양(전용면적, m^2)			임 대(전용면적, m^2)				소 계	85 m^2 초과	60~ 85 m^2	60 m^2 이하	소 계	40 m^2 이하	40~ 50 m^2	50~ 60 m^2	세대수	1,546	1,260	107	789	364	286	132	119	35	비율	100.00	81.50	6.92	51.04	23.54	18.50	8.54	7.70	2.26
구 분	합 계	분 양(전용면적, m^2)			임 대(전용면적, m^2)																																										
		소 계	85 m^2 초과	60~ 85 m^2	60 m^2 이하	소 계	40 m^2 이하	40~ 50 m^2	50~ 60 m^2																																						
세대수	1,546	1,260	107	789	364	286	132	119	35																																						
비율	100.00	81.50	6.92	51.04	23.54	18.50	8.54	7.70	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당 전용면적 85m^2이하 : 65%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m^2이하 : 25% 이상 • 임대주택 건립비율 <table border="1"> <thead> <tr> <th>평 형</th> <th>전용면적 40m^2이하</th> <th>전용면적 40~50m^2이하</th> <th>전용면적 50~60m^2이하</th> </tr> </thead> <tbody> <tr> <td>배분비</td> <td>40~50%</td> <td>40~50%</td> <td>10~20%</td> </tr> </tbody> </table> 								평 형	전용면적 40 m^2 이하	전용면적 40~50 m^2 이하	전용면적 50~60 m^2 이하	배분비	40~50%	40~50%	10~20%																																
평 형	전용면적 40 m^2 이하	전용면적 40~50 m^2 이하	전용면적 50~60 m^2 이하																																												
배분비	40~50%	40~50%	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세대수의 18%이상 확보 <p>※ 법적으로 17%이상이지만 7구역의 학교시설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1/2감면으로 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균등 배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신길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p>※ 연면적 : 용적률을 산정용 연면적</p> <p>※ 기준용적률 20%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 해당부분은 주택규모 60m^2(전용면적) 이하로 건설 (서울시 '소형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름)</p>																																															

6) 가구 및 흙지에 관한 계획(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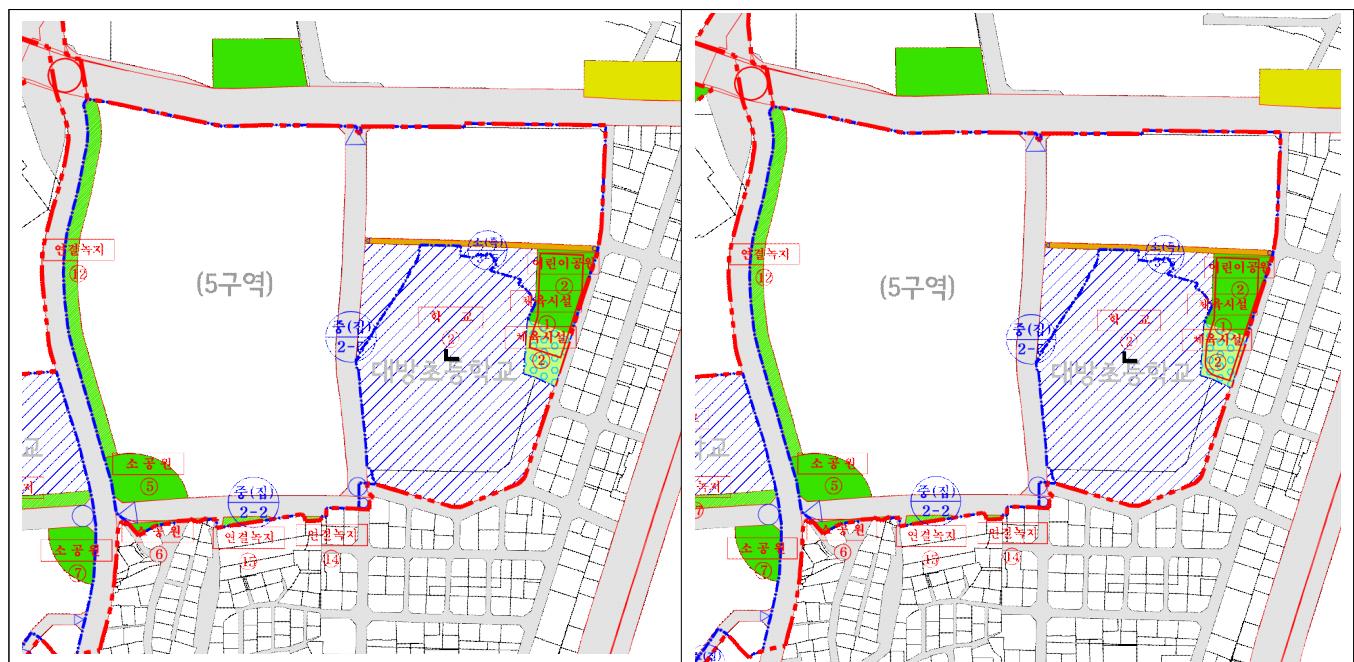
시설의 구분	면적 (m^2)	흙지						비고	
		구 분	위치		면적(m^2)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5	62,866.2	5-1	신길동 1583-1번지 일대	45,490.2	-	45,490.2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5-2	신길동 766-3번지 일대	13,583.4	-	13,583.4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5-3	신길동 1588번지 일대	1,777.2	-	1,777.2	학교편입		
		5-4	신길동 531번지 일대	958.7	-	958.7	학교편입		
		5-5	신길동 1190번지 일대	29.1	-	29.1	학교편입		
		5-6	신길동 549번지 일대	1,027.6	-	1,027.6	문화시설(당초) → 체육시설(변경) (무상귀속 : 구)		

<신길5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신길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도>_지하1층

<신길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도>_지하2층



불임 2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부서 협의결과

- 협의기간 : 2025. 5. 8. ~ 5. 22.(14일간)
- 협의부서 : 서울시(7개부서), 영등포구(14개부서)

구 분	계	반영	추후반영	해당사항 없음	의견없음
합 계	82	8	52	12	10
서 울 시	33	8	24	1	-
영등포구	49	-	26	13	10

-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공원 지상부 설치가능 시설물 종류 및 면적에 대한 법적 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공원 지상부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면적에 대해서는 시설계획과 및 공원조성과와의 협의를 통해 법적 검토를 완료하였음. 다만, 해당 공간에 중복되는 3,000m² 미만의 입체공원이 포함될 경우, 도시계획·공동위원회 공동자문단의 자문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향후 자문절차를 통해 시설 설치 면적, 구조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자문을 통해 확정할 예정임. 	추후 반영
1. 공원조성 및 중복결정 (서울시 재정비촉진과, 시설계획과, 공원조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체육시설의 경우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출입동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공간의 용도를 문화시설에서 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운영계획 및 출입동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운영계획의 경우, 2025년 학교복합시설 하반기(2차) 공모사업을 위해 수립한 운영방안, 프로그램 구성 및 재원 조달 계획 등을 토대로 공모에 응모하여 당선되었으며, 해당 공모계획을 기반으로 시설을 운영할 예정임. 출입동선의 경우, 대방초등학교와의 연계 통로확보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인근지역 주민의 보행동선 확보를 위해 신길5구역을 연결하는 소로(특)3-5호선과의 연계를 고려하였으며,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진출입 동선 및 편의시설 계획 또한 보완하여 제시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결정되는 입체공원은 도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면적 3,000m² 미만인 본 시설은 도시 	추후

관련부서(기관)	협의 의견	조치 계획	비고
1. 공원조성 (서울시 재정비촉진과, 시설계획과, 공원조성과)	<p>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자문을 통해 면적 및 구조 등 완화 검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상호간 위해가 없도록 하고, 지하공간 사용에 따른 자연생태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 후 계획 수립 	<p>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자문을 통해 면적 및 구조 등 완화 검토 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인 어린이공원 면적은 1,981m²으로,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공동자문단의 심의 및 자문을 통해 불가피한 경우 시설 상호간 위해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자문 및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지하공간 사용에 따른 자연생태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 후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계획에 반영하겠음 	반영
	<p>• 중복결정 부지는 토심 2.0미터 이상 확보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공원상부로 노출되는 부속시설(계단실, 차량진출입로 등)은 공원외곽에 설치하여 공원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p>	<p>• 중복결정 부지는 토심 2.0미터 이상 확보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공원상부로 노출되는 부속시설(계단실, 차량진출입로 등)은 공원외곽에 설치하여 공원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p>	추후 반영
2. 보행 및 자전거계획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p>[보행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와 닿아있는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하며, 보행동선 제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등 안전시설을 기설치 하였으며, 사업지 진출입로에 도로반사경을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사업지 진·출입보행동선을 제시하겠음 	반영 (별첨1)
	<p>• 차량 진출입부는 보행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도높이를 유지하고 보도와 차도 교행구간의 바닥마감재는 색상 및 질감 등을 달리하여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사업지 시공 시 보도높이를 유지하고 보도와 차도 교행구간의 바닥마감재는 색상 및 질감 등을 달리하여 설치하겠음 	추후 반영
	<p>[자전거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 이용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 주차시설(10면)을 설치하고 자전거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해 자전거 주차장 표시와 공기주입기를 설치하겠음 	반영 (별첨1)
	<p>• 자전거 주차시설은 주출입구 통로 변에 설치하는 등 접근성 및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되 차량과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상과 연결되는 층 내에서 분산 배치되도록 계획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 주차시설은(10면)은 차량과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고, 접근성 및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해 사업지 주출입구에 설치하겠음 	반영 (별첨1)
3. 환경계획 (영등포구 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건축 현장 부지는 인접한 곳에 평온한 환경을 요하는 주거시설, 교육기관(학교)등이 위치하여 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한 곳에 평온한 환경을 요하는 주거시설, 교육기관(대방초등학교)등이 위치하여 추후 공사시 소음·진동, 비산먼지 발생에 	추후 반영

관련부서(기관)	협의 의견	조치 계획	비고
	진동,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집단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상기 사전 신고시 제출한 대책 외 추가로 선제적인 소음·먼지 저감대책(착공시부터 특정공사 완료시까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규정에 따른 공사 소음·진동의 주기적 측정 및 관리, 이동식 에어방음벽 보강설치, 특정공사 장비 작업시간 조정 등)을 수립·시행할것	따른 소음·먼지 저감대책(착공시부터 특정 공사 완료시까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규정에 따른 공사 소음·진동의 주기적 측정 및 관리, 이동식 에어방음벽 보강설치, 특정공사 장비 작업시간 조정 등)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 별첨1.

자전거 주차시설 및 안전시설물 설치



보행동선

